제 7 장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

제1절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발생현황

1. 생활오수 발생현황

생활수준향상과 도시화등으로 오수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말 우리도의 생활하수 발생량은 523,508㎥/일로 하수처리구역내가 450,752㎥/일(86%), 하수처리구역외가 72,756㎥/일(14%)로 1인당 0.34㎥정도의 하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오수발생량은 물 사용량과 비례하고, 주요 발생원은 일반가정,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주방 등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이 대부분 오수로 변하여 배출되고 있다.

오수에는 유기물질, 부유물질 및 영양염류 등의 주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발생된 오수는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후 하천이나 강으로 흐르게 된다.

하수 발생량

(단위:㎥/일)

지 역 (시·군·구)	하 수 발 생 량			비 율 (%)
	계	하수처리구역내)	하수처리구역외	
계	523,508	450,752	72,756	86.1
청 주 시	252,160	245,348	6,812	97.3
충 주 시	63,640	50,912	12,728	80.0
제 천 시	56,601	56,601	-	100.0
청 원 군	35,042	16,453	18,589	47.0
보 은 군	13,696	9,615	4,081	70.2
옥 천 군	9,578	6,521	3,057	68.1
영 동 군	9,226	9,226	-	100.0
증 평 군	16,710	16,710	-	100.0
진 천 군	21,063	15,323	5,740	72.7
괴 산 군	10,351	5,105	5,245	49.3
음 성 군	25,287	12,023	13,264	47.5
단 양 군	10,154	6,915	3,239	68.1

2. 분뇨발생 현황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등으로 수세화율이 1996년 52.7%에서 2008년 92.3%로 수거식의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고 수세식의 발생량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분뇨처리 과정을 보면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된 가정·상가등에서 발생된 분뇨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다시 수거하여 분뇨처리장등에서 최종처리하고 있으며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서 발생된 분뇨는 수거하여 자연환원 및 분뇨처리장,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량 최종처리되고 있다.

분뇨 발생량

(단위:㎥/일)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929.0	889.0	872.0	896.0	1,503	1,501	1,540	1,540	1545	1,563	1,593	1,391
수 거 식	394.3	300.2	259.0	238.3	224	205	266	266	179	121	122	120
수 세 식	534.7	588.8	613.0	657.7	1,279	1,296	1,274	1,274	1,366	1,442	1,471	1,270
수세화율(%)	57.5	66.2	70.3	73.4	85	86	88	88	90	92.2	92.3	-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단위:개소)

시 설 수	20미만	20~50미만	50~100미만	100~500	500이상
24,915	21,846	1,942	635	450	42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개소)

시 설 수	20미만	20~50미만	50~100미만	100~500	500이상
99,453	67,915	16,410	7,720	6,852	556

처리방식별 정화조 설치현황

(단위:개소)

계	부패탱크	임호프 탱 크	살 수 형 부패탱크	살수여상	폭기방법	접촉폭기	기 타
98,453	31,669	3,188	26,189	1,017	593	33,171	3,626

3. 가축분뇨 발생현황

가축분뇨는 소, 말, 돼지의 분뇨와 축사의 세정수가 혼합되어 발생되는 폐수로 오염부하량이 높아 미처리 배출시 하천이 수질악화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여 상수원 및 농업용수 등을 오염 시킬 뿐 아니라 악취, 해충발생 등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축산시설의 대형화로 소규모 축산농가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 수준의 증대와 이에 따른 식생활의 향상으로 축산식품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식품소비의 증가는 축산 사육의 규모 증가를 초래하였고, 축산시설에 의한 오염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2008년말 현재 6,641천㎥/일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돈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3,573천㎥/일(54%)이며 소와 말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2,212천㎥일(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주시(938천㎥/일), 청원군(1,582천㎥/일), 음성군(798천㎥/일)이 전체 발생량의 50%인 3,318천㎥/일을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8년말 현재 우리도의 총 축산사육 두수는 14,226천마리로써 닭, 오리 13,343천마리, 돼지 669천마리, 소·말이 165천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별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총 4,540개중 퇴비화 4,005개로 88%이며 액비화 185개, 정화처리 58개이며, 공공처리시설 유입처리 165개, 기타 127개의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가축사육 현황

구 분	마 리 수 (두)					
	계	젖소	소 · 말	돼지	양 · 사슴	닭 · 오리
계	14,226,865	25,534	165,477	669,304	22,707	13,343,843
청 주 시	61,011	573	2,664	3,048	1,238	53,488
충 주 시	1,947,839	1,371	14,263	80,283	150	1,851,772
제 천 시	937,303	382	13,102	28,004	4,062	891,753
청 원 군	2,489,284	9,500	49,228	107,791	4,265	2,318,500
보 은 군	947,455	3,110	16,000	28,030	315	900,000
옥 천 군	478,384	699	17,509	4,433	162	455,581
영 동 군	700,641	1,161	8,648	27,440	3,026	660,366
증 평 군	296,173	530	3,096	45,396		247,151
진 천 군	1,786,474	4,361	9,817	148,511	3,347	1,620,438
괴 산 군	2,107,908	671	14,371	89,414	4,338	1,999,114
음 성 군	2,105,721	3,097	13,538	97,275	0	1,991,811
단 양 군	368,672	79	3,241	9,679	1,804	353,869

축산폐수 발생량

(단위:㎥/일)

시·군·구	계	젖소	소 · 말	돼지
계	6,641	857	2,212	3,573
청 주 시	90	26	38	26
충 주 시	938	65	282	591
제 천 시	450	17	191	241
청 원 군	1,582	358	674	550
보 은 군	479	117	219	143
옥 천 군	326	32	256	38
영 동 군	186	21	49	116
증 평 군	459	24	45	390
진 천 군	520	50	27	443
괴 산 군	678	25	197	456
음 성 군	798	117	186	496
단 양 군	134	4	47	83

가축농가별 분뇨처리시설 현황

(단위:개소)

구분		처리유형				공공처리시설유입	기타
		계	정화처리	퇴비화	액비화		
2001	계	2,783	125	2,482	176	62	28
	허가	582	18	530	34	18	-
	신고	2,201	107	1,952	142	44	28
2002	계	2,995	108	2,715	172	60	39
	허가	645	17	592	36	18	2
	신고	2,350	91	2,123	136	42	37
2003	계	3,437	99	3,007	151	75	105
	허가	728	15	656	38	17	2
	신고	2,709	84	2,351	113	58	103
2004	계	3,390	100	3,007	151	76	56
	허가	729	15	656	38	18	2
	신고	2,661	85	2,351	113	58	54
2005	계	30,706	404	26,687	1,771	814	1,005
	허가	1,023	25	888	63	43	4
	신고	2,935	35	2617	114	57	85
2006	계	4,321	56	3,697	378	35	156
	허가	1,260	20	1,030	157	12	41
	신고	3,061	36	2,667	221	23	115
2007	계	4,513	58	3,889	234	157	175
	허가	1,070	21	846	80	76	47
	신고	3,443	37	3,043	154	81	128
2008	계	4,540	58	4,005	185	165	127
	허가	1,045	21	809	80	124	11
	신고	3,495	37	3,196	105	41	116

제2절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1. 오수처리 실태

충청북도 2008년말 하수 발생량은 523,508㎥/일 이중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450,752㎥(86%)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35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외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후 하천이나 호수 등으로 방류되고 있다.

2. 분뇨의 적정처리

분뇨의 처리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

또한 분뇨는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년1회이상 수거하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도내 분뇨처리장은 13개소이며 1일 1,458㎥/일의 처리용량의 시설이 가동중으로 이중 단독처리시설은 단양군 1개소이며 그 외, 모든시설은 1차처리후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일)	처리방법	설치년도
계	13개소	1,458		
청주시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682-10	550	전 처 리	2000
충주시	충주시 봉방동 649-3	200	전 처 리	2001
제천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18	98	전 처 리	1999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474-89	30	액상부식법	1999
옥천군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45	30	전 처 리	1993
영동군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 677-3	45	액상부식법	1999
증평군	괴산군 증평읍 연탄리 268-2	50	액상부식법	1987
진천군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1	60	전 처 리	2000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14	50	액상부식법	2000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45	40	액상부식법	1999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314	40	전 처 리	2001
단양군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10-2	55	액상부식법	1983
청원군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366	210	액상부식법	2007

분뇨 관련업체 현황

지 역 (시·군·구)	업체수 (개소)	종사인원 (명)	시설(차량) 확보현황(대수)				
			계	3톤이하	4.5톤이하	8톤이하	기 타
충청북도	60	165	141	9	36	72	24
시부	22	89	52	2	6	37	7
청주시	15	64	36	1	6	23	6
충주시	5	14	10	1	-	9	-
제천시	2	11	6	-	-	5	1
군부	38	76	89	7	30	35	17
청원군	7	13	25	-	1	13	11
보은군	5	15	12	3	5	4	-
옥천군	3	4	7	2	4	1	-
괴산군	4	8	8	-	2	2	4
음성군	8	14	16	-	8	7	1
영동군	4	5	8	-	5	3	-
증평군	2	6	6	2	1	3	-
진천군	3	94	5	-	3	1	1
딘양군	2	2	2	-	1	1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종 현황

구 분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하수처리시설 제조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업소수	설계·시공실적		업소수	제조실적		업소수	관리실적	
		시설수	용량(톤)		오수처리시설수	정화조수		오수처리시설수	정화조수
충청북도	36	745	18,702	6	1,688	5,035	42	872	5
청주시	7	30	11,885	-	-	-	13	230	-
충주시	5	81	1,048	-	-	-	6	186	-
제천시	5	69	815	1	48	-	5	59	4
청원군	5	-	-	-	-	-	4	-	-
보은군	-	-	-	-	-	-	-	-	-
옥천군	3	58	266	1	8	-	1	7	-
영동군	1	6	176	-	-	-	1	44	-
증평군	-	-	-	-	-	-	-	-	-
진천군	6	442	3,789	3	1,380	5,029	7	218	1
괴산군	1	43	173	-	-	-	1	37	-
음성군	3	16	550	1	232	6	4	91	-
단양군	-	-	-	-	-	-	-	-	-

3. 가축분뇨처리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오염물질로서 오염부하량이 생활하수 등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BOD가 20,000~25,000mg/ℓ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도의 가축분뇨발생량은 1일 6,641㎥정도로 대부분이 농가자체 처리시설에서 정화처리 또는 퇴비화하고 있으나 규제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화하고 있으나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우리도에서는 1997년부터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과 괴산군에 28,645(청원 3,452 진천 5,958 보은 11,072 괴산 7,533) 백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 용량 640톤규모(청원 200톤×2, 진천 100톤, 보은 80톤, 괴산 60톤)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중에 있으며, 2006년부터 청원군과 진천군에 21,522(청원 18,149 진천 3,373)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에 가축분뇨 90톤(충주 50톤, 청원 40톤)을 병합처리하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구분	시군명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일)	사업기간	처리방법
총 계		5개소		640		
운영중	청원군	등곡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 407-9	200	'97~2000	자연정화법
		내수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529-126	200	'97~2000	자연정화법
	진천군	진천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601-66	100	'98~2000	연속회분식 처리공법
	보은군	보은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691-2	80	'04~2008	바이오 세라믹공법
	괴산군	괴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38-3	60	'02~2008	MBR공법

제3절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리대책 추진

1. 오수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중인자는 년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이하의 오수를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1일 처리용량	지 역	항 목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50㎥ 미만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이하
			부유물질(㎎/ℓ)	10이하
		특정지역및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20이하
			부유물질(㎎/ℓ)	20이하
	50㎥ 이상	모든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이하
			부유물질(㎎/ℓ)	10이하
			총질소(㎎/ℓ)	20이하
			총인(㎎/ℓ)	2이하
			총대장균군수(개/㎖)	3,000이하
정화조	11인용 이상	수변구역및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ℓ)	100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이상
토양침투처리방법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처리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퍼센트 이상 제거 나. 1차 처리장치를 거쳐 토양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 250㎎/ℓ 이하				

2. 분뇨관리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SS 대장균군 검사를 하였으나 '96년부터 총질소, 총인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99년부터는 총질소 및 총인의 수질 기준이 2배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COD항목도 추가되는 등 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분뇨처리시설	30이하	50이하	30이하	60이하	8이하	3,000이하

3. 가축분뇨관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하천 및 호수등의 부영양화 현상의 주 오염물질인 질소와 인이 신규로 규제되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시설은 법적으로 개별정화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및 행정처분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규제미만의 시설은 법적규제가 없어 가축분뇨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ℓ)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98.12.31까지	30이하	-	30이하	120이하	16이하	-
'99. 1. 1부터	30이하	50이하	30이하	60이하	8이하	3,000이하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단위:㎎/ℓ)

구 분		허 가 대 상		신 고 대 상	
		'99. 12. 31까지	2000.1.1부터	'99. 12. 31까지	2000.1.1부터
특정지역	BOD	50이하	50이하	350이하	150이하
	SS	50이하	50이하	350이하	150이하
	T-N	-	260이하	-	-
	T-P	-	50이하	-	-
기타지역	BOD	150이하	150이하	500이하	350이하
	SS	150이하	150이하	500이하	350이하

(담당자 : 수질관리과 수계관리 최주선 ☎ 043-220-4824)

제 8 장

폐 기 물 처 리

제1절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제2절 폐기물처리 기반 구축

제3절 폐기물 재활용과 감량화

제4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제5절 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절 쓰레기 종량제 추진

제 8 장 폐 기 물 처 리

제1절 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

1. 생활폐기물

가. 생활쓰레기 발생현황

2008년도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500톤으로 4.5톤 트럭 333대분이 발생하였으며 도민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0.97kg으로 독일, 영국등 선진국의 0.9kg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종이류, 음식물쓰레기등 가연성쓰레기가 13.2% 유리, 금속등 불연성쓰레기가 37.6%, 빈병류, 폐고지등 재활용 가능 쓰레기가 49.2%를 차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변화추이

구분 / 연도별	총인구(천명)	발생량(톤/일)	1인1일발생량(kg)
1998	1,486	1,143	0.77
1999	1,492	1,327	0.89
2000	1,498	1,390	0.93
2001	1,452	1,404	0.97
2002	1,472	1,433	0.97
2003	1,499	1,429	0.95
2004	1,493	1,493	1.00
2005	1,496	1,493	0.99
2006	1,505	1,511	1.00
2007	1,506	1,541	1.02
2008	1,542	1,500	0.97

나.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매립처리되어 왔으나, '95년 1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 이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매립 37.6%, 재활용 49.2%, 소각 13.2%로 아직도 폐기물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편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 및 소각 시설등의 확충을 통하여 매립되는 폐기물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쓰레기 처리 변화추이

구분 / 연도별	계(톤/일)	매 립	소 각	재 활 용
1998	1,143	765	46	332
1999	1,327	726	39	562
2000	1,390	811	34	545
2001	1,404	775	48	581
2002	1,433	812	35	586
2003	1,429	745	51	633
2004	1,493	735	48	710
2005	1,493	663	48	782
2006	1,511	702	43	766
2007	1,541	653	98	790
2008	1,500	564.1	197.6	739.1

다.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

1) 청소인력

우리도의 2008년도 쓰레기 청소인력 1,033명으로 시·군직영이 646명이고 민간대행업소가 387명으로 장비가 현대화될수록 청소인력은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청소장비

2008년말 현재 청소장비는 쓰레기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를 위해 차량 377대, 매립복토를 위한 중장비 26대, 손수레 28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전용운반차량 65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대부분 수집·운반 차량으로써 차량 투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인력·손수레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 투입이 가능한 지역은 차량을 이용한 청소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인력 및 장비 변화 추이

구분 / 연도별	청소인력(명)	장비 (대)			
		계	차 량	손수레	중장비
1998	1,007	817	270	523	24
1999	1,095	711	275	411	25
2000	993	603	300	283	20
2001	944	675	311	348	16
2002	989	713	317	377	19
2003	1,131	851	434	390	27
2004	1,116	790	389	373	28
2005	1,101	723	326	363	34
2006	1,092	670	325	315	30
2007	1,099	721	364	302	55
2008	1,033	691	377	288	26

2. 사업장폐기물

가. 발생현황

1) 사업장 일반폐기물

2008년도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총 3,209톤/일로서 이중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197톤/일, 각종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3,012톤/일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음식물쓰레기등 가연성 폐기물이 33%, 병류, 캔류등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60.4%, 금속·연탄재등 불연성폐기물이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오니류, 폐합성수지류 가연성폐기물이 2,225톤/일로 전체의 7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6.1%가 광재, 연소재 등 불연성폐기물이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단위:톤/일)

구분 / 연도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계	가연성	불연성
1998	140	83	15	42	4,144	3,790	354
1999	143	73	10	60	4,999	4,280	719
2000	192	83	20	89	5,109	4,448	661
2001	183	92	38	53	5,541	4,786	755
2002	171	94	22	55	5,824	4,978	846
2003	208	111	42	55	6.016	5,104	912
2004	202	127	24	51	5.751	4,625	1,126
2005	213	134	17	62	6.081	4,859	1,222
2006	238	144	16	78	3.557	2,468	1,089
2007	176	69	18	89	3.259	2,372	887
2008	197	65	13	119	3,012	2,225	787

2)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아파트공사, 도로공사등 각종 대형 토목,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며,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콘크리트, 토사,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연중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도의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5,896톤/일로써 불연성폐기물이 5,826톤/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통계 전산시스템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단위:톤/일)

구분 / 연도별	계	가연성	불연성				
			계	건설폐재류	금속류	유리류	기타
1999	1,939	69	1,870	1,836	24	4	6
2000	2,300	131	2,169	2,132	26	6	5
2001	4,980	62	4,917	4,833	35	18	31
2002	3,634	103	3,531	3,488	20	-	23
2003	7,263	119	7,144	7,100	22	-	22
2004	5,229	119	5,110	4,962	15.5	0.1	132.4
2005	4,028	38	3,990	3,436	1	1	552
2006	5,630	129	5,501	4,781	2	1	717
2007	6,272	67	6,205	5,257	0.1	0.2	947.7
2008	5,896	70	5,826	5,371	1	1	453

3)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생체축적성, 급성독성, 난분해성, 부패성등으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의 위해성이 큰 폐유, 폐산, 폐알카리등 11여종을 지정폐기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관련 업무는 대부분 환경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어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점차 지정폐기물 관련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도 우리나라 지정폐기물 발생량은 총3,471천톤으로 우리 도에서는 104천톤이 발생하여 전국 발생량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년도별 변화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정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

(단위:천톤/년)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 국	1,922	2,733	2,779	2,820	2,914	2,875	2,975	3,151	3,659	3,471
충 북	46	63	58	45	50	54	64	71	92	104

나. 처리현황

1)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은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중부권이 산업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의 IMF 경제위기에 따라 발생량이 다소 증감하고 있으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그 성상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슷하고 처리방법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폐기물로써 처리 주체는 배출원인자에게 있지만 시·군 조례에 의거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008년도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일 197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매립 6.6%, 재활용 60.4%, 소각 33%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 변화추이

구분 / 연도별	계(톤/일)	매 립	소 각	재 활 용
1998	140	24	26	90
1999	143	16	41	86
2000	192	24	49	119
2001	183	32	43	108
2002	171	29	31	111
2003	208	26	50	132
2004	202	28	40	134
2005	213	17	37	159
2006	238	11	74	153
2007	176	19	59	98
2008	197	13	65	119

(나)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폐기물로써 2008년도에 3,012톤/일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재활용이 52.1%, 소각이 15.8%, 매립 26.1%, 해양투기 6%를 차지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유기성오니, 식물성잔재물, 동물성잔재물 등 유기성폐기물은 비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무기성오니, 광재 등은 벽돌제조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변화 추이

구분 / 연도별	계(톤/일)	매 립	소 각	재 활 용	해양투기
1998	4,144	493	704	2,947	-
1998	4,999	545	810	3,644	-
2000	5,109	533	953	3,623	-
2001	5,541	557	1124	3,701	159
2002	5,824	511	1095	4,001	217
2003	6,016	437	1,074	4,274	231
2004	5,751	264	579	4,655	253
2005	6,081	299	627	4,906	249
2006	3,557	553	790	2,057	157
2007	3,259	759	969	1,474	57
2008	3,012	787	477	1,569	179

2) 건설폐기물

대형 공사장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재생처리등을 거쳐 재생골재등으로 재활용되기도 하고, 매립장의 복토재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2008년도에 우리 도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1일 5,896톤으로 2003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였다.

건설폐기물은 대부분이 재활용되는데 2008년도의 처리방법을 살펴보면 재활용이 5,782톤/일로 전체의 9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립이 0.7%, 소각이 1.2%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 변화추이

구분 / 연도별	계(톤/일)	매 립	소 각	재 활 용
1998	1,004	106	32	866
1998	1,939	24	55	1,860
2000	2,300	19	111	2,170
2001	4,980	25	61	4,894
2002	3,634	2	90	3,542
2003	7,263	2	88	7,173
2004	5,229	10	64	5,155
2005	4,028	2	18	4,008
2006	5,630	1	75	5,554
2007	6,272	4.5	64.5	6,203
2008	5,896	44	70	5,782

3) 지정폐기물

2007년도 우리 도에서는 총 104,511톤이 발생되어 이중 배출자가 자기처리한 양이 2,972톤, 위탁처리가 100,234톤, 기타 보관량이 1,305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는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나 처리업체가 없어 대부분 타 시·도에 위치해 있는 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지정폐기물 처리 변화추이

구분 / 연도별	계(톤/년)	자가처리	위탁처리	보 관 량
1997	55,689	9,009	45,874	806
1998	45,519	6,404	34,293	4,822
1998	62,518	20,175	49,459	1,059
2000	57,859	8,719	47,945	1,195
2001	45,125	5,698	37,998	1,429
2002	49,777	3,362	45,614	801
2003	54,817	1,443.4	52,515.9	857.7
2004	64,348	1,401.4	61,973.8	972.8
2005	71,468	1,288	69,344	836
2006	92,524	1,634	83,859	7,031
2007	104,511	2,972	100,234	1,305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팀 김병철 ☎ 043-220-4794)

제2절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

1. 매립시설

가. 설치현황

2008년말 도내에서 운영중인 매립시설수는 12개소로써 이중 완벽한 위생매립시설이 12개소이며 '95년 1월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배출량이 감소되는 반면 재활용품은 증가 추세에 있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양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의 단순매립에서 탈피하여 시·군별 1개소씩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98년도에 충주시와 괴산군의 위생매립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에 청주 광역, 증평, 영동군의 위생매립장, 2002년도에는 단양 위생 매립장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에는 충주, 음성위생매립장의 2단계 조성공사를 추진하였고, 2005년도에는 제천 자원관리센터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하였다.

쓰레기 매립지 현황

시군별	개소수	면적(㎡)	총매립용량(㎥)	기매립량(㎥)	잔여매립가능량(㎥)
계	12	390,771	4,904,104	2,950,152	1,953,952
청 주	1	100,500	1,288,000	1,192,734	95,266
충 주	1	62,296	1,258,079	584,188	673,891
제 천	1	29,380	259,410	11,500	247,910
청 원	-	-	-	-	-
보 은	2	24,253	216,836	106,469	110,367
옥 천	1	28,595	438,073	296,062	142,011
영 동	1	18,441	118,342	87,048	31,294
증 평	1	50,596	363,061	251,158	111,903
진 천	1	9,918	28,500	15,500	13,000
괴 산	1	35,591	550,800	120,562	430,238
음 성	1	17,100	280,000	247,974	32,026
단 양	1	14,101	103,003	36,957	66,046

1) 문제점

현재 사용중인 위생매립장의 사용 종료가 다가오는 위생매립장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지역의 국비지원은 매년 개소당 15억원, 시지역의 위생매립장은 국고 30%만 지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위생매립장 위치 선정시 대두되는 NIMBY 현상은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어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대책

위생매립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확대가 요구되고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반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의 대책이 요망된다.

또한 대단위 신규 택지개발 및 공업단지조성 사업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시 폐기물처리시설구역 결정을 추진하고, 시·군별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한 매립장 예정지 사전예고제로 주민반발을 최소화하며, 주민개발사업 시행으로 주변 영향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적기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방침이다.

다. 앞으로 계획

사용종료가 예상되는 시군의 위생매립장은 2009년까지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2008도에는 중대형 소각장을 설치하여 매립 위주에서 소각장을 증가시킴으로서 매립지 사용 연장 및 주민 반발을 해소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원활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비위생 매립장의 재정비 사업 및 사용 종료된 매립지의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매립된 폐기물을 조기분해, 안정화시키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립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목식재, 체육시설, 공원조성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 소각시설

가. 설치현황

2008년 현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시·군의 매립장 부지에 설치된 공공시설이 7개소에 시설용량 9,575kg/시간, 시설 설치비 28,346백만원, 년간 유지비 910백만원이며 관리 인원은 35명이다.

보유매립장내 소각시설 현황

구분	소 재 지	용 량 (kg/hr)	소각방식	운영방식	설치년도	비 고
계	7개소	9,575	-			
제 천	제천시 신동 625	3,750 (90톤/일)	유동상식	연속식	'08. 8.	매립장내
보 은	보은읍 용암리 산34	625 (10톤/일)	스토카식	준연속식	'03. 2.	매립장내
옥 천	군북면 추소리 1	1,250 (30톤/일)	스토카식	연속식	'07. 4.	매립장내
증 평	도안면 광덕리 11-1	750 (12톤/일)	스토카식	준연속식	'06. 5.	매립장내
괴 산	괴산읍 능촌리 465	1,000 (10.0톤/일)	스토카식	회분식	'00. 1.	매립장내
음 성	맹동면 통동리 산20	1,250 (10톤/일)	스토카식	연속식	'95. 8.	매립장내
단 양	매포읍 하괴리 416	950 (19톤/일)	스토카식	연속식	'02. 4.	매립장내

나. 앞으로의 계획

소규모 소각시설을 다이옥신등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시설로 확충하여 매립위주의 처리방식에서 소각위주로 전환하고, 소각시설입지 선정시 주민 참여 및 사전 예고제 실시로 주민 반발을 해소하여 청주권에 1일 200톤, 충주시에 100톤, 영동군 20톤, 진천·음성군 50톤/일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 추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시 군	개 소 수	용 량 (톤/일)	설치비 (백만원)	년간유지비 (백만원)	관리인원 (명)
계	7	179	35,290	3,202	49
청 주					
제 천	1	90	14,998	1,500	18
청 원					
보 은	1	10	2,000	111	3
증 평	1	12	2,813	205	3
옥 천	1	30	6,965	810	15
괴 산	1	8	2,558	240	3
음 성	1	10	1,142	160	3
단 양	1	19	4,814	176	4

3.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

우리 도내에는 2008년말 기준 수집·운반업체가 200개소로 수집·운반 인원은 1,022명이고 수집·운반차량은 800대, 중장비는 14대로 수집 운반량은 8,057천톤으로 나타났다.

수집·운반업체 현황

구 분	업체수	수집운반 인원 및 장비현황			수 집 운 반 량 (천톤)
		인원(명)	차량(대)	중장비(대)	
2004	179	1,053	780	1	9,139
2005	198	1,154	881	1	2,549
2006	167	923	673	6	1,814
2007	203	1,089	718	8	1,640
2008	200	1,022	800	14	8,051

나. 중간처리 업체

폐기물을 파쇄, 소각, 압축, 분쇄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체로 우리 도내에는 72개 업체가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30,140톤이며 설치비는 55,00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관리인원은 334명으로 2008년도에 처리량은 3,183천톤으로 나타났다.

중간처리업체 현황

구 분	업체수	중간처리 시설 현황			처 리 량 (천톤)
		처리능력 (톤/일)	설치비 (백만원)	관리인원 (명)	
2004	71	16,975	46,626	382	1,970
2005	71	14,035	51,465	418	2,200
2006	69	30,219	44,600	389	3,338
2007	66	30,020	54,275	359	3,604
2008	72	30,140	55,007	334	3,183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팀 김병철 ☎ 043-220-4794)

제3절 폐기물재활용과 감량화

1. 재활용품 분리수거품목 및 수거량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등 공동주택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등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2~4종으로 분류하여 분리수거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방법은 공동주택지역의 경우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하여 수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부녀회등 주민단체가 수거일시를 정하여 직접 수거하는 방법이 확산되고 있고, 단독주택지역의 경우에도 기존의 문전수거방식외에 주민들이 정해진 일시에 재활용품을 수거 차량에 직접 배출하는 대면수거방식이 늘고 있다.

또한 생활폐기물 재활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량은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크다.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실적

(단위:톤/일)

년도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소 계	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2003	12,182.5	688	11,494.5	4,274	7,173	47.5
2004	10,591.7	761	9,830.7	4,655	5,155	20.7
2005	9,788	844	8,944	4,906	4,008	30
2006	8,539	844	7,695	2,057	5,554	84
2007	8,643	879	7,764	1,474	6,203	87
2008	8,259	858	7,401	1,569	5,782	50

2. 재활용품 처리체계 구축

가정에서 분리비출한 재활용가능품을 읍·면·동의 간이보관장에 수집·운반하여 품목별로 분류·선별한 후 시장성이 있는 품목은 재생공장이나 민간수집상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시·군·출장소의 집하선별장에 이송, 압축기, 파쇄기등으로 재활용가능품 부피축소 및 수집·운반등의 물류비를 최소화 하고 재활용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 및 인계 또 다시 선별, 압축·파쇄등의 중간처리를 하거나 가공 후 비축하였다가 재생공장에 원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생용품 분리수거체계

<table>
<tr><th>재활용품
분리배출</th><th>1차처리</th><th>2차처리</th><th>3차처리</th><th>최종처리</th></tr>
<tr><td>주 민</td><td>읍·면·동</td><td>시·군·구</td><td>재생공사</td><td rowspan="3">재생공장</td></tr>
<tr><td>공동주택
상가지역등</td><td>간이보관장
(주민단체,
민간수집상)</td><td>집하선별장</td><td rowspan="2">재생공사
사업소
(비축기지)
(민간수집상)</td></tr>
<tr><td>단독주택</td><td>간이보관장
(민간수집상)</td><td>(민간수집상)</td></tr>
</table>

3. 재활용 활성화 대책 추진

가. 폐기물 재활용운동 추진

매년 각종 신문, 방송 (TV, 라디오, 유선, 마을엠프), 프래카드, 유인물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폐기물 재활용 운동이 생활화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재활용 관련시설 설치 현황

매년 각종 재활용장비의 확충과 함께 재활용관련시설인 읍·면·동·마을 단위 간이 보관장, 시·군·출장소별 집하선별장, 재활용센터를 아래표와 같이 운영 관리하여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 있다.

재활용 관련시설 현황

전담차량	재활용센타 (자원화선별장)	알뜰교환 시 장	재활용제품 판 매 장	집하선별장	간이보관장
62대	11개소	62회개최	21개소	17개소	135개소

제4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 추진배경

우리 도의 2008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360톤/일으로 전체 생활 쓰레기 발생량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하여 소각 및 매립처리하는데 효율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상당량의 곡물과 식품을 수입하는 우리의 실정에서 볼 때 국가적 낭비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내실있는 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률 변화추이

구 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 생 량(톤/일)	275	271	266	264	263	319	340	374	357	360
재활용량(톤/일)	69	104	135	155	172	222	298	330	311	327
재 활 용 율(%)	25	38	50.8	58.7	65.4	69.6	87.6	88.2	87.1	90.8

3.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IMF이후 경제 활성화에 따라 낭비적인 음식문화가 재현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을 강화,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주, 중주, 제천 3개시에 대한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금지를 확대 추진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 91,651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여성단체 등과 캠페인 28회, 간담회 및 세미나 등 14회를 개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감량의무사업장 3,608개소에 대한 관리 강화로 배출원에서의 감량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감량의무화 사업장 현황

총 계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시설
3,608	810	2,762	13	2	21

나.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의 보급과 전용수거차량 확보로 가정 및 사업장 583천개소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시스템을 구축하여 327톤/일 재활용하였다.

도내에는 9개소 911톤/일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구 분	시설수(개소)	시설용량(톤/일)	비 고
공공시설	4	207	
민간시설	5	704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팀 이규헌 ☎ 043-220-4793)

제5절 1회용품 사용제한

1. 1회용품 사용규제 범위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1회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94년 3월부터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자제와 무상 제공억제를 위한 규제를 실시하여 왔으며 '99년 2월 및 2003년 1월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장을 확대 강화하였다고 2004년 1월부터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년도별	신고건수	과태료 부과		포상금지급		비 고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06	318	302	33,950	177	7,920	
2007	463	355	39,800	289	15,460	
2008	350	187	17,750	186	6,440	

규제가 강화된 대상업소는 객석과 객실면적이 33㎡ 이상인 식품접객 업소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 강화되어 이들 업소는 1회용품(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등) 사용과 합성수지재질로 코팅 또는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를 억제하고 있으며,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는 매장면적 150㎡ 이상에서 매장면적 33㎡이상인 모든 매장으로 규제를 확대하여 1회용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업종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약국, 서점 등에 대해 확대 관리하고 있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현황

구 분	계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장	숙박업소	판매업소				
						대규모점포	도소매업소	즉석판매식품가공업	재활용제품판매장	기 타
1999	29,350	21,574	601	290	1,074	211	1,877	1,227		2,496
2000	28,545	22,051	625	299	1,035	197	1,878	1,357		1,103
2001	28,707	22,188	647	297	1,017	196	1,900	1,369		1,093
2002	27,648	21,960	604	242	974	210	1,601	1,347		710
2003	32,101	23,069	728	267	1,106	288	2,295	1,975		2,373
2004	33,104	22,477	722	272	1,090	175	5,075	2,488		49
2005	33,514	22,318	899	269	1,097	159	5,217	2,730	12	813
2006	37,141	25,943	942	322	957	167	5,329	2,890		591
2007	44,534	21,059	1,269	230	1,125	82	17,603	2,912		254
2008	44,704	22,108	1,262	221	1,069	50	17,058	2,746		190

제6절 쓰레기 종량제 추진

1. 기본방향

쓰레기 수수료는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추진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 돈이 들 듯이 버릴때도 돈이 든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근검절약은 쓰레기를 줄이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국민 정신의 함양에 있다.

2. 실시시기

'9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3. 적용대상

종량제 적용 대상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이다.

4. 배출방법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시장·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며, 규격봉투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의 7종류로 대부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봉투의 색상을 구분하여 혼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청색을 기준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 및 전용 봉투에 배출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관별	수집·운반·처리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주민부담율
계	50,288	11,841	23
청주시	22,621	5,430	24
충주시	4,560	1,916	40
제천시	3,496	1,020	27
청원군	2,855	1,088	34
보은군	1,971	202	8
옥천군	3,062	313	11
영동군	3,424	267	8
증평군	1,042	260	25
진천군	1,438	360	24
괴산군	767	144	19
음성군	2,732	682	25
단양군	2,261	159	7

5. 대형폐기물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냉난방기 등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인의 주소, 성명, 배출폐기물명, 수량등을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향후 추진계획

가. 사업장 폐기물의 종량제 확대적용

사업장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가능한 종량제 확대적용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 실시하고 있다.

나.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강화

지금까지와 달리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쓰레기 불법 투기는 환경 범죄로 간주 적법 조치하여 불법 투기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 다는 준법 의식을 제고하였다.

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

IMF 경제 위기 이후 모든 주민들이 그간의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반성하는 등 가장 좋은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원순환팀 김병철 ☎ 043-220-4794)

제 9 장

토양환경보전

제1절 토양 환경 보전 실태

제2절 토양 오염 방지 대책

제3절 환경보전시책

제 9 장 토양환경보전

제1절 토양환경보전 실태

1. 토양환경보전 개요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1995. 1. 5. 법률 4906호로 제정되었다.(개정 '97.12.13, '99.2.8, 2001.3.28, 2004.12.31, 2005.3.31, 2006.9.27, 2006.10.4, 2007.4.11, 2007.5.17)

가. 토양환경보전의 필요성과 관리방향

토양은 사람, 동·식물 및 토양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기반의 절대적인 생명의 터다. 이러한 토양이 산업시설, 문화생활발달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중금속, 유·무기화합물이 대량으로 발생되어 토양생태계 및 자연환경을 급속히 파괴시켜 한정된 토양환경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환경을 유지·보존하는 생태계순환기능과 유해물질유입에 대한 여과·완충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지역의 먹이사슬을 통하여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산업시설, 문화생활이 주는 토양오염의 경로를 살펴보면 자동차의 매연, 공장의 분진· 폐수와 각종 폐기물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중 중금속이 하천, 공기에 배출되어 최종적으로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오염물질이 된다.

일단 토양이 오염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소 토양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나. 토양 오염 물질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토양중에서 오래 동안 잔류하면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며 이러한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17개 검사 항목(중금속 8개, 일반항목9개)을 지정하여 오염여부를 검사·관리하고 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중금속은 다량으로 자연상태에 존재하고 일부 중금속은 생물에 미량으로 필요하나, 허용량 초과시 토양에 축적되고 축적된 중금속은 동·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며, 동·식물 및 인체에 축적됨으로써 사람의 건강 및 농산물의 품질, 생산량을 저하 시키는 심각성이 있다.

중금속의 종류 및 인체의 영향

중금속 종 류	특 징	영 향
카드뮴 (Cd)	아연 정련의 부산물로 생성 도금, 합금, 폴리염화비닐의 안정제 및 건전지에 이용	가슴통증, 구토, 심할 경우 폐기능 부진으로 사망 이따이이따이병 원인 (뼈를 탈골 및 위축시키는 병)
수은 (Hg)	수은의 형태(금속, 무기, 유기) 미나마타병의 원인 : 공장 폐수중 유기수은이 해안에 확산 어패류에 축적 이를 먹을 때 발병	미나마타병증상 두통, 현기증, 불면증, 발생과 보행불능, 수족떨림 현상 초래 → 사망
비소 (As)	20c초 매독 치료약으로 사용 독성이 강해 전시에는 독가스로 사용	피부의 색소이상 비점막반흔, 비중격(코)천공, 빈혈, 결막염등
납 (Pb)	납은 생체밖으로 배출되는 양보다 축적되는 양이 많아 특히 위험	조혈기관, 소화기관, 중추신경계, 심장, 간기능에 손상

중금속 종 류	특 징	영 향
크롬 (Cr)	크롬은 3가크롬과 6가크롬이 있으며 독성에 차이가 있음 3가크롬은 인체에 필수원소 6가크롬은 유독성물질 (다만 생체내에서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상호 변화 가능)	피부·호흡기계통장애 크롬 부족시 당뇨병, 동맥경화증 발병
구리 (Cu)	적색의 광택이 있는 건성과 연성의 금속으로서 독성이 있음	구리결핍은 저색소성 소적혈구성 빈혈, 과량섭취는 구토, 저혈압등

2. 토양오염 기준

토양오염에 대한 검사는 사람 및 동·식물에 많은 위해를 주고 있는 토양 속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정기적인 측정결과 오염원이 법정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면 적합으로 인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토양오염우려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대상지역은 오염원인자 부담하에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 기준은 모두 "가"지역 "나"지역으로 구분한다. "가"지역은 지적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답, 대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수목, 잔디 식생지에 한한다) 유원지, 종교용지 및 사적지, "나"지역은 지적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 잡종지 등 오염이 더욱 심한 지역을 말한다.

토양오염이 우려·대책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하여서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제공자에게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객토 및 토양개량제사용, 오염된 수로의 준설 등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 기준

오 염 물 질	가지역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		나지역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및잡종지)	
	우려기준	대책기준	우려기준	대책기준
카 드 뮴	1.5	4	12	30
구 리	50	125	200	500
비 소	6	15	20	50
수 은	4	10	16	40
납	100	300	400	1,000
6 가 크 롬	4	10	12	30
아 연	300	700	800	2,000
니 켈	40	100	160	400
불 소	4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	30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12	30
시 안	2	5	120	300
페 놀	4	10	20	50
유 류 (동·식물성제외)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BTEX)	-	-	80	200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1,200	2,000	5,000
- 트리클로에틸렌(TCE)	8	20	40	1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10	24	60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별표3,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7

비고 : 토양오염우려적용기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 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①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② 가 지역에서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정택주 ☎ 043-220-4753)

제2절 토양오염 방지대책

1. 오염된 토양관리

가.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운영

토양 측정망 운영은 도내 토양에 대한 토양오염 진행상황, 변화추이 등토양오염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복원하는 등 토양환경보존의 중·단기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96. 1. 6일 시행된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라 '9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우리도의 2008년 토양측정망은 총 248개 지점으로서 이중 전국망이 85개 지점, 실태조사 163개 지점이다.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의 개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용도별로 설치되었고, 실태조사는 토양오염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지점을 매년 변경하면서 조사하여 공장 및 공업지역, 공장폐수유입 주변지역 등 11개 오염 우려지역별로 조사하고 있다.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 운영 구분

구 분	측 정 망	실 태 조 사
주 관	환경부(지방환경관리청)	시·도(시·군·구)
설치지점	토지용도별(전, 답, 과수원등 농경지와 공장용지, 잡종지)	오염원별(영농오염원, 기타생활오염원 등과 수질, 대기, 폐기물오염원등)
측정주기	매년1회(시료채취 3-5월, 분석 4-10월)	좌 동
측정항목	- 중 금 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8) : PCB, 유기인, 페놀, 유류, 시안, TCE, PCE, 불소 - 토양산도(PH)	- 중 금 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8) : PCB, 유기인, 페놀, 시안, 유류, TCE, PCE, 불소, - 토양산도(PH)
검사결과 기준초과 지 역	- 토양오염지역 정밀조사후 시·도에 통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방지조치 명령 및 오염토양복원	- 토양오염지역 정밀조사후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방지조치 명령 및 오염토양복원(객토)

토양측정망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002	85	17	7	4	15	6	4	4	2	9	5	4	5
2003	83	17	7	4	15	5	7	4	2	9	5	4	4
2004	85	17	7	4	15	6	7	4	2	9	5	4	5
2005	85	17	7	4	15	6	7	4	2	9	5	4	5
2006	85	17	7	4	15	6	7	4	2	9	5	4	5
2007	85	17	7	4	15	6	7	4	2	9	5	4	5
2008	85	17	7	4	15	6	7	4	2	9	5	4	5

토양오염실태조사 현황

(단위:개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2002	215	14	28	16	26	13	22	16	17	21	22	13	7
2003	134	10	9	12	14	10	13	12	12	11	15	11	5
2004	134	10	9	12	15	10	13	13	11	11	15	10	5
2005	158	10	12	14	16	10	19	15	12	14	15	16	5
2006	154	10	12	12	16	10	16	13	13	14	16	16	6
2007	151	12	12	13	15	10	15	13	15	14	16	11	5
2008	163	15	14	14	18	13	18	16	17	16	18	15	7

오염원별 측정지점수

(단위:개소)

오염원별		충북	비고
계		163	
수질	공장폐수 유입지역	10	
	공장 및 공업지역	66	
	기타 토지개발 등 지역	9	
대기	원광석, 고철 야적장 등 지역	2	
	금속제련소지역	3	
폐기물	일반폐기물 매립·소각등지역	24	
	금속광산지역	30	
사고발생, 민원유발지역		5	
기타생활	공단주거지역	4	
	어린이놀이터지역	6	
	교통관련 시설 지역	4	

나. 토양오염 실태조사

도내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수질, 대기, 폐기물, 사고발생, 민원유발 지역, 기타생활 등 5개 오염경로별 12개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 폐금속광산주변지역 6개 지점 등 총 8개 지점에서 카드뮴(Cd), 구리(Cu), 납(Pb)이 우려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조사되어 조치 중에 있다.

(2) 시안(CN), 유류는 도내 전 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3) 오염원별로 보면 수질 및 폐기물오염경로가 대기, 기타 등 다른 오염경로에 비하여 높게 검출되어 산업활동에 의한 토양오염이 더 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토양 측정망 및 실태조사 지점 총수는 3,882개소(측정망 1,500 실태조사 2,382)이며 우리도내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지점 총수는 248개소(측정망 85, 실태조사 163)이다.

토양측정망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점을 살펴보면 전국 13개소이나 우리 도 내에는 초과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토양 정밀조사

1) 조사대상

토양 정밀조사는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검사 결과에 따라 오염지역 개선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기관별 기능

구 분	기 관 명	기 능	비 고
측정망	환 경 부	토양측정망 운영 총괄 토양정밀조사 계획 수립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지 방 환 경 청	전국토양측정망 운영 토양정밀조사 계획 및 조사실시	
실태조사	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토양정밀조사계획 및 조사실시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요청 및 관리	
	시·군	시료채취의뢰 토양오염실태조사운영 및 유지관리 정밀조사협조	
	보건환경연구원	시료채취 및 분석 토양정밀조사 계획 및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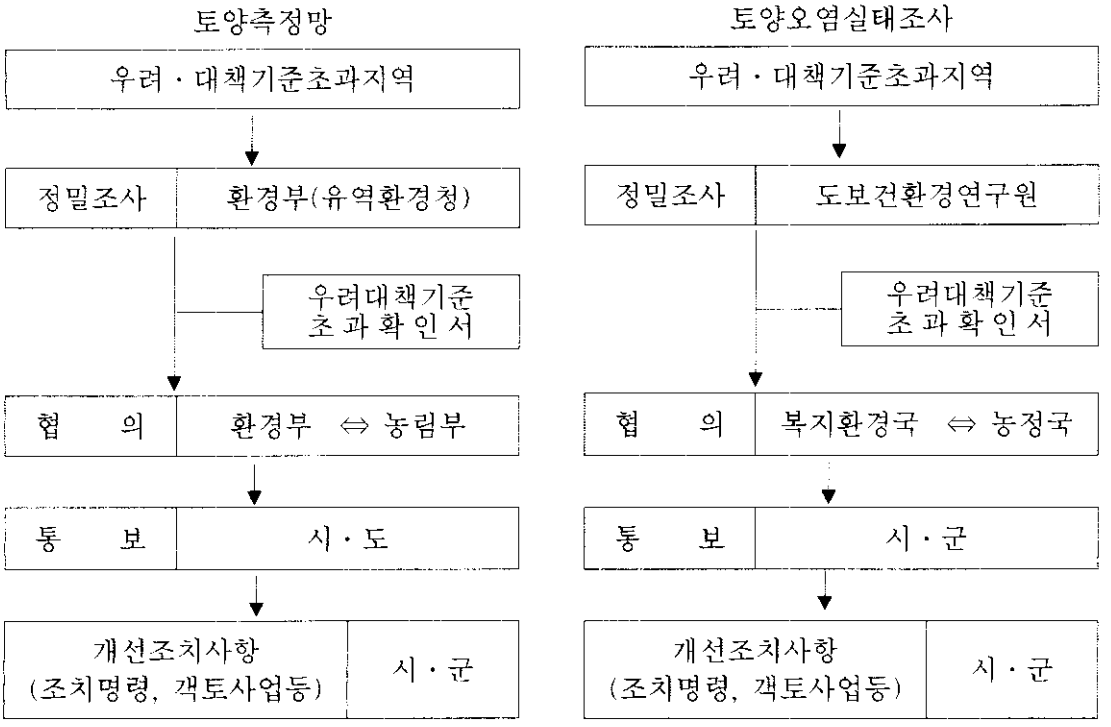
기관별 정밀조사 적용기준

기 관 별	적 용 기 준
국립환경연구원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지역
지방환경관리청	토양오염측정망 운영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
도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 또는 기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2) 조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로서 시장·군수가 주변 토양오염원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토양오염물질 및 토양PH를 조사항목으로 한다.

오염토양 개선사업 시행도



2.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방지

가.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를 말하며 그중 2만리터 이상의 유류저장시설은 관할 시·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오염 상태를 검사·관리하고 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분류

시 설 분 류	대 상 범 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 장 시 설	소방법시행령 별표3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 액체를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 장 시 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 판매업, 보관, 저장업, 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중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기 타	위 물질과 유사한 토양오염물질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내역서와 도면, 명칭, 용량 등을 관할 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신고된 업소는 토양오염도 검사주기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전문 관련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대상시설	검사주기
당해 저장시설 설치후 5년 이하인 시설	최초검사후 3년, 5년이 되는 해에 각 1회
당해 저장시설 설치후 5년이 경과되고 15년 이하인 시설	매 2년마다 1회
당해 저장시설 설치후 15년이 경과된 시설	매년 1회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	매년 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수도법제5조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단, 대기보전대책지역 제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매년 1회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오염물질 함유 정도를 확인하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지하매설 저장시설의 저장물질이 누출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누출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토양 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법령개정 됨 07.11.13) 이상일 경우에는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하저장시설 누출검사결과 누출이 확인된 경우 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누출부위에 대한 개·보수 등 누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석유류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석유계총탄화수소(TPH)항목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확인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하여서는 시·군에서 시정 또는 필요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검사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누출검사 실시(지하매설저장시설에 한함), TPH 항목조사(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 범위 파악, 시설 및 오염토양개선 사업 사항 등을 조치하여 토양 오염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토양 오염 유발 설치자는 토양전문기관에서 통보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구 분	신 고 업소수	산 업 시 설				유독물
		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난방시설 등)	
계	1,395	1,377	932	310	135	18
청 주 시	194	194	159	21	14	
충 주 시	200	199	143	18	38	1
제 천 시	139	139	105	20	14	
청 원 군	236	235	123	86	26	1
보 은 군	51	51	42	5	4	
옥 천 군	64	61	42	12	7	3
영 동 군	59	58	44	8	6	1
증 평 군	32	32	21	5	6	
진 천 군	126	123	61	58	4	3
괴 산 군	66	62	58	2	2	4
음 성 군	171	166	94	64	8	5
단 양 군	57	57	40	11	6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주유소	산업시설	난방시설	주유소	산업시설	난방시설	주유소	산업시설	난방시설	주유소	산업시설	난방시설	주유소	산업시설	난방시설
검사	442	176	86	394	142	68	452	165	70	370	121	59	441	130	69
우려기준 미만	435	174	83	392	142	66	434	165	70	368	121	59	435	129	68
우려기준 초과	7	2	3	2	-	2	18	-	-	2	-	-	6	1	1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정택주 ☎ 043-220-4753)

제 10 장

환경보건시책

제1절 환경보건시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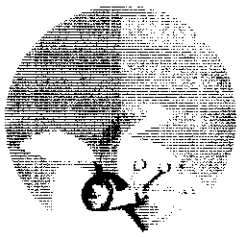
제 10 장 환경보건시책

제1절 환경보건시책 추진

최근 대기·수질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석면 및 각종 화학물질노출에 따른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Well-Being, LOHAS 등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 확산 등 환경행정에 대한 수요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적인(precau-tionary principle) 환경보건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 폐광 등에서 환경성 질환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개별적인 역학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규명하고 대처하던 것이, 환경보건정책 중장기 로드맵이자 실천계획인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06~'15, 환경부)'의 확정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규명하고 화넝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조사사업과 석면광산, 폐금속광산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환경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과 예방관리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환경성질환 위협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위험인구를 최소화하여 환경보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①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② 부문별 환경오염 위험인구 최소화와, ③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부 록

제1장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시행

제2장 환경오염 피해분쟁 제도의 시행

제3장 각종 조례 및 운영 규정

제4장 환경관련 용어 해설

제 1 장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시행

제1절 배출부과금 부과 · 징수

제2절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 징수

제3절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 · 징수

제1장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시행

제1절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 개요 및 내용

배출부과금은 대기·수질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6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2. 부과방법

배출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분야에 부과되는데 초과부과금은 처리부과금+종별부과금과 기본부과금으로 나뉘어 산정된다.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배출부과금	산 출 기 초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량(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조업일수)×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지역별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농도별 부과계수(대기)(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계수(수질))

배출부과금	산 출 기 초
초과부과금	처리부과금+종별부과금
처리부과금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위반회수별 부과계수
종별부과금	수질분야 사업장규모에 따라 1종사업장에 400만원, 2종사업장 300만원, 3종사업장 200만원, 4종사업장에 100만원, 5종사업장에 50만원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분 야 별	오 염 물 질	적 용 대 상
대기분야 (9)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허가(신고)를 받은 배출시설과 무허가(미신고)시설로서 지도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의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할 것을 사업자 스스로가 신고하는 경우(부적정 운영 자진신고)
수질분야 (19)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 총질소, 총인, 크롬 및 그 화합물,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페놀류, 시안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학물, 6가크롬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배출부과금 부과 실적

'97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제도 도입으로 2007년 362백만원을 2008년은 52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008년도에는 대기분야 281건에 183백만원을 부과하여 전체부과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수질분야는 129건에 343백만원을 부과하여 전체부과금액의 65%로 대기분야는 기본배출부과금이 수질분야는 초과배출부과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방지시설의 개선 및 청정연료 사용 증가로 부과금액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축산폐수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제도는 과태료부과로 전환되어 부과실적이 없다.

배출부과금 부과 현황

(단위:원)

구분	계	대 기	수 질	축산폐수
1998	1,749,817,390	1,572,804,970	175,990,700	1,021,720
1999	1,183,828,220	969,210,310	212,950,000	1,667,910
2000	1,618,786,960	500,073,470	1,108,651,780	10,061,710
2001	721,537,050	498,191,610	221,488,670	1,856,770
2002	551,432,900	342,618,280	202,009,920	6,804,700
2003	627,538,060	413,508,340	208,376,900	565,220
2004	631,180340	364,862,040	266,318,300	-
2005	436,700,050	283,342,440	153,35,7610	-
2006	378,698,990	244,487,020	134,211,970	-
2007	362,864,300	202,270,850	160,593,550	-
2008	527,416,300	183,922,550	343,493,750	-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정철기 ☎ 043-220-4783)

제2절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1. 부과 대상 및 방법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95년부터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평균 판매가액의 100분의 20범위(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 · 징수하여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에 40%를 교부하고 도에서는 징수비용으로 20%의 금액을 교부받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2. 부과 징수 현황

년도별	징수금액(원)	국고(40%)	자치단체 교부 기준		
			계	시군(40%)	도(20%)
1996	12,483,695,490	5,617,663,000	6,866,032,490	5,617,662,970	1,248,369,520
1997	8,164,321,210	3,673,944,540	4,490,376,670	3,673,944,540	816,432,130
1998	4,220,804,230	1,688,321,690	2,532,482,540	1,688,321,690	844,160,850
1999	6,793,658,390	2,717,463,370	4,076,195,020	2,717,463,360	1,358,731,160
2000	5,337,841,030	2,135,136,430	3,202,704,590	2,131,037,040	1,071,667,550
2001	2,670,647,340	1,068,258,940	1,602,388,400	1,068,258,940	534,129,460
2002	3,357,319,840	1,488,829,740	1,256,502,930	1,048,883,520	207,619,410
2003	3,434,168,830	1,373,667,540	2,060,501,290	1,373,667,530	686,833,760
2004	3,102,778,200	1,241,111,280	1,861,666,920	1,241,111,280	620,555,640
2005	3,388,927,250	1,355,570,900	2,033,356,350	1,355,570,900	677,785,450
2006	3,188,390,360	1,275,356,150	1,913,034,210	1,275,356,140	637,678,070
2007	2,990,012,800	1,196,005,120	1,794,007,680	1,196,005,120	598,002,560
2008	3,416,086,750	1,366,434,700	2,049,652,050	1,366,434,700	683,217,350

(담당자 : 수질관리과 지하수 임헌표 ☎ 043-220-4853)

제3절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징수

1. 개 요

인간생활에서 수반하는 환경오염물질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되는데 경제발전과 수반하여 비례적으로 증가 심화되고 있다.

생산제조부문에 있어서는 배출 허용기준의 설정 적용 오염물질의 배출에 따른 지도단속과 배출부과금의 부과금 규제를 하고 있으나 유통소비부분에 있어서는 직접규제방식이 엄격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경제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높아가고 이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자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비자가 오염물질 처리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서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91. 12. 3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93년 하반기부터 시설물에 대하여 최초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94년 상반기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부과 징수 현황

가. 부과징수 절차

구 분	부과기준일	부 과 기 준	납 기	비 고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 1~ 6. 30까지	9. 16 ~ 9. 30	
하반기	매년 12월31까지	7. 1~12. 31까지	익년 3. 16 ~ 3. 31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 현황

(단위:천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715	180,418	3,995	153,612	87.7
1995	155	2,815	148	2,624	93
1996	185	4,227	177	3,964	94
1997	219	6,101	206	5,673	93
1998	236	8,129	216	7,407	91
1999	254	9,712	227	8,722	90
2000	147	11,325	127	10,478	93
2001	343	12,664	293	10,488	83
2002	373	14,624	315	12,654	86.5
2003	403	15,857	329	13,501	85.1
2004	429	17,349	351	14,626	84.3
2005	462	17,915	385	14,886	83.1
2006	483	19,643	391	16,166	82.3
2007	502	20,326	408	16,518	81.3
2008	524	19,731	422	15,905	80.7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이경호 ☎ 043-220-4745)

제4절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징수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광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10억원의 범위에서 산정 부과하여 2003년도부터 2008년말 현재까지 108개 사업에 185억원을 부과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현황

년도별	부 과 현 황 (단위: 건, 백만원)		비 고
	부과건수	부과액	
계	101	16,823	-
2004년도	18	3,210	-
2005년도	10	1,599	-
2006년도	12	2,144	-
2007년도	29	3,396	-
2008년도	32	6,474	-

2. 생태계복원사업 추진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의 시행,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리도는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를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아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박경옥 ☎ 043-220-4764)

제 2 장

환경오염 피해분쟁 제도의 시행

제1절 환경오염과 피해분쟁 제도의 개요

제2절 환경오염 피해 사건의 처리기관

제3절 분쟁조정 절차

제4절 분쟁조정 신청

제5절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을 위한 조치

제6절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사건 현황

제 2 장 환경오염 피해분쟁 제도의 시행

제1절 환경오염과 피해분쟁 제도의 개요

1.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

지구상에 인구가 적었을 때는 자연의 자정능력이 더 커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생기고 인간의 욕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산업생산도 증가함으로써 자연훼손의 범위는 물론 파괴 강도가 커져 지구생태계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고, 지구생태계의 자정능력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자 이제는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60년대 이후의 가속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의 향상은 가져왔으나 '7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면에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함과 동시에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원재료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역시 질적, 양적 측면에서 현저히 증가하게 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상의 환경권 피해로 인간의 생활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으며, 환경오염의 피해는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환경오염 피해분쟁

가. 환경오염피해분쟁의 발생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과거 개발논리가 우선되었던 시대에는 나타나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던 욕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의 범위도 넓고 대규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염원인으로 인하여 피해와의 인과관계 규명에도 점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민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는 일은 드물었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분쟁의 법률적, 기술적 특수성 때문이었다.

나. 환경오염 피해분쟁의 특징

(1) 분쟁의 당사자가 다수

피해의 광역화에 따라 피해구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특히 가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책임분담이 불명확하게 되기 쉽다.

(2) 인과관계 규명의 논란

장기적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원인상황의 변경·소멸 등으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적인 조사·분석 없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환경오염피해의 다양화

환경오염피해는 인체, 생활환경, 동식물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그 형태도 다양하며, 사람의 신체 등 건강에 관한 분쟁인 경우 사회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4) 배상능력의 한계

다중성을 띠고 심각한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제기하는 환경오염 피해의 치유나 구제에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나 가해자측이 충분한 배상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자연환경 자체가 오염되는 등 광역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특성과 범위

가.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특성

환경오염피해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며 오염현상은 재현이 불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의 속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의 구제에 있어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피해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는 가해자의 무과실책임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 기준의 준수만으로는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나.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

환경오염피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 등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업장 등에 2개 이상이고, 어느 사업장에서 오염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가해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사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제도

가. 필요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인들은 행정관서에 의한 민원해결 차원의 구제나 양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상호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과 사법적 재판절차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식이 대체로 이용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민원 처리방식이나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며, 법원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 있고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피해 구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방식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공평 타당성을 취하고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 과학적인 지식·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행정기관이 환경분쟁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제도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와는 다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소비자보호법), 노사분쟁에 대한 노동쟁의조정제도(노동쟁의 조정법), 사법부에 의한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법)를 들 수 있다.

나. 도입효과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단순히 피해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오염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공장이나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는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도록 하여 우리 모두가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업에게도 도움을 준다. 기업으로서는 당장 가해행위에 대한 피해배상도 부담이 되겠지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기업 이미지 손상과 나아가서는 상품판매가 어렵게 될 것이므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함께 오염방지 기술발전을 서두르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도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도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박종우 ☎ 043-220-4752)

제2절 환경오염 피해사건의 처리기관

1.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가. 설치목적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의 행정기관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업 무

(1) 환경분쟁의 재정(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직권조정
(5) 지방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정하여 이송한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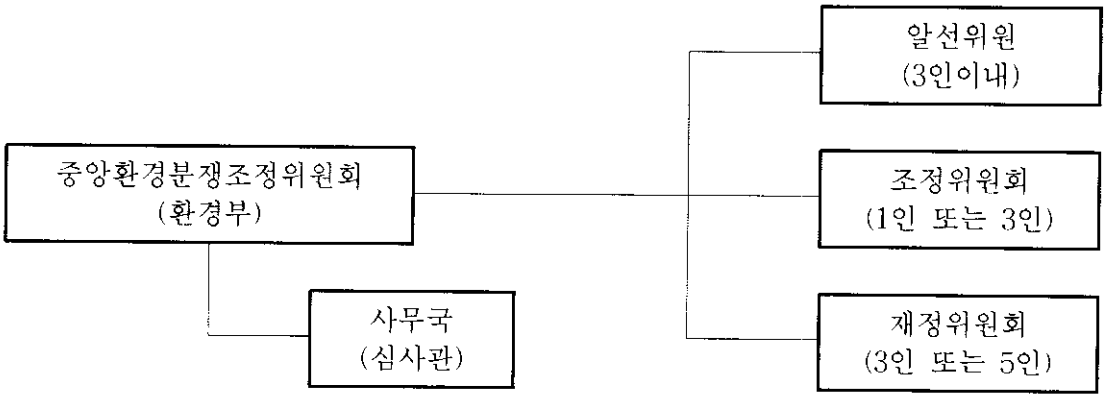
다. 구 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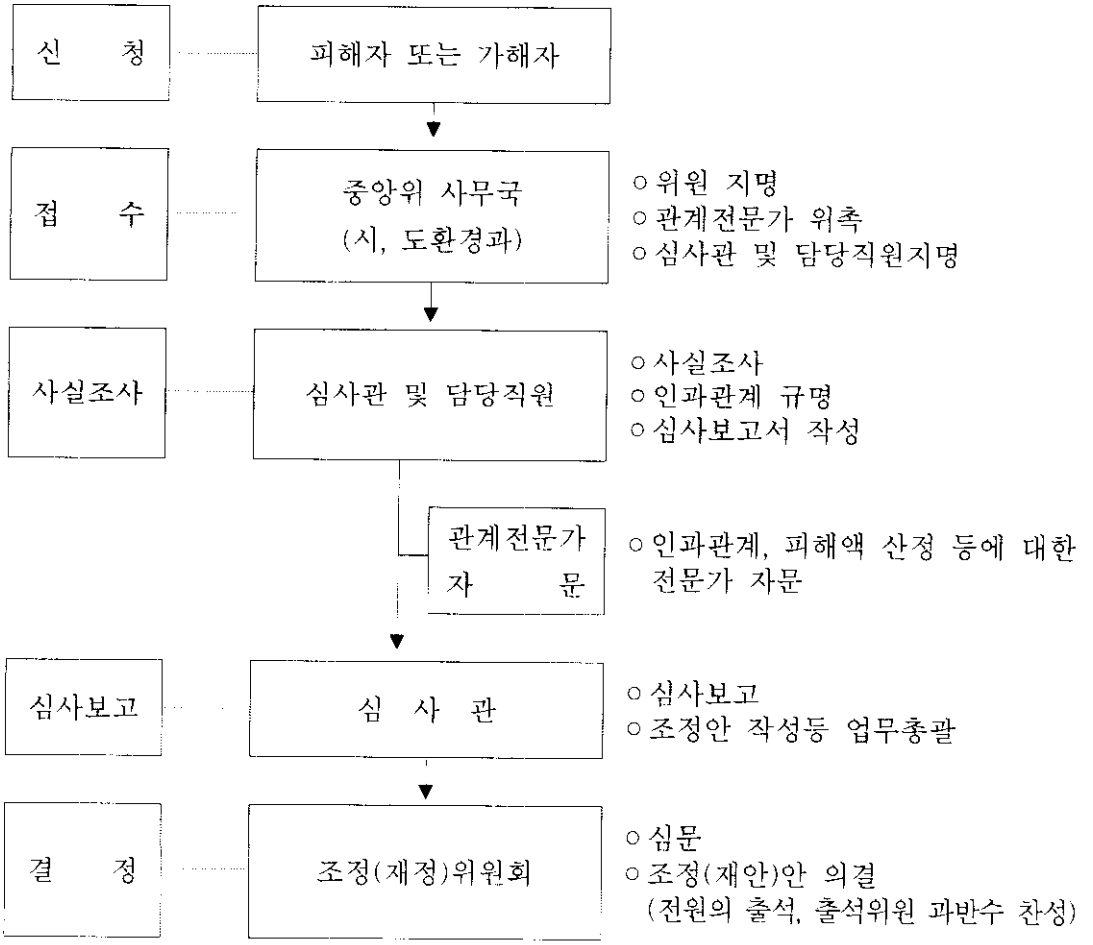
분쟁조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피해액을 산정하며, 산정기준을 연구·개발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관을 둔다.

위원장은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라. 조 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사무국
(심사관)
알선위원
(3인이내)
조정위원회
(1인 또는 3인)
재정위원회
(3인 또는 5인)

마. 운영체계


신 청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접 수
중앙위 사무국
(시, 도환경과)
○위원 지명
○관계전문가 위촉
○심사관 및 담당직원지명
사실조사
심사관 및 담당직원
○사실조사
○인과관계 규명
○심사보고서 작성
관계전문가
자 문
○인과관계, 피해액 산정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심사보고
심 사 관
○심사보고
○조정안 작성등 업무총괄
결 정
조정(재정)위원회
○심문
○조정(재안)안 의결
(전원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2. 지방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가.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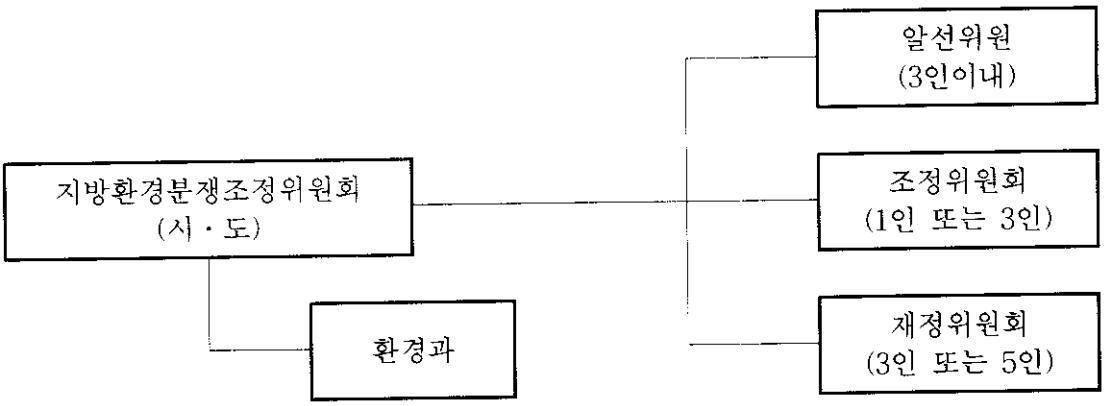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 및 1억원 이하의 재정

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명하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 조직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박종우 ☎ 043-220-4352)

제3절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의 처리절차

가. 알 선

(1) 알선위원 지명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원회 위원중에서 매 사건마다 3인 이내의 알선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간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한다.

알선위원은 당사간의 분쟁을 알선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합의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알선은 당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당사자간의 교섭을 지원,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은 하지 않는다.

(2) 알선의 개시와 처리기간

알선절차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관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위원회는 3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알선의 효력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된다.

(4) 알선의 중단

알선으로는 분쟁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알선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뜻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나. 조 정

(1) 조정위원회의 구성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건마다 3인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를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정위원회의 조사권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사업장 기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조정의 개시와 처리기간

조정의 시작은 분쟁당사자가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위원회는 9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락을 권고한다.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한 관계당사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 재 정

(1) 재정위원회의 구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사건마다 5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한다. 다만,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의 분쟁사건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행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재정위원회의 조사권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질문 및 진술청취,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의 요구,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및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를 할 수 있다.

(3) 재정의 개시 및 처리기간

당사자 일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위원회는 9월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당사자등이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재정의 효력

재정은 문서로 하되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선정대표자·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 주문, 신청의 취지, 이유, 재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재정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재정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환경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시효의 중단 및 소송과의 관계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집행중인 때에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거나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한다.

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의 공정과 이에 대한 국민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은 물론 당해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제 척

위원회의 위원에게 아래의 제척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제척사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나. 기 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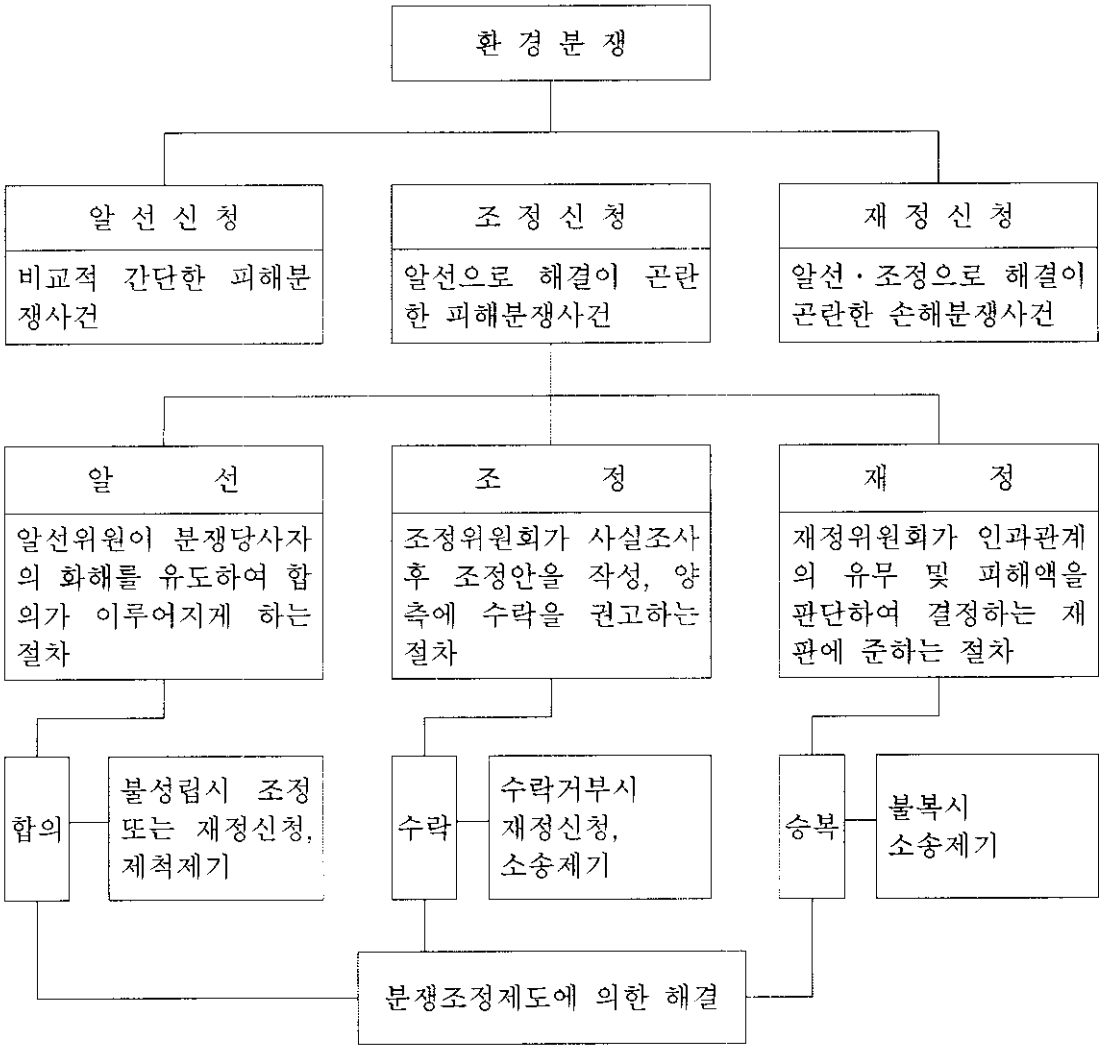
다. 회 피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준 용

위 사항은 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3. 분쟁조정 절차의 흐름도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박종우 ☎ 043-220-4752)

제4절 분쟁조정 신청

1. 신청대상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등에 의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폐·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환경피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2. 신청주체에 따른 구분

가. 당사자에 의한 신청

나. 대표당사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요건으로써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인 이상이고, 선정대표자에 의한 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하며,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뿐만 아니라 3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수인 관련분쟁조정이 신청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신청 후 15일 이내에 공고하고, 당해 공고안을 그 분쟁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단체의 요건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성원은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 직권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3.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박종우 ☎ 043-220-4752)

제5절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을 위한 조치

1.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가. 퇴장명령 등

위원회는 조정을 원활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분쟁조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분쟁사건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다.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에 있어서 환경피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경피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받거나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벌 칙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열람·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하는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서한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분쟁조정의 비용

가. 조정비용

위원회가 행하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중 위원회의 위원·심사관, 직원, 관계전문가·협조인의 출장비용, 참고인의 출석 및 우편료, 전신료 등은 국가가 부담하나, 그 외의 비용은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나. 신청수수료

알선·조정·재정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 및 당해절차에의 참가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알선·조정·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환경피해 청구액별 수수료

(단위:원)

구 분	500만원이하	5천만원	1억원	5억원
알 선	10,000	10,000	10,000	10,000
조 정	10,000	77,500	127,500	527,500
재 정	20,000	155,000	255,000	1,055,000

4. 서류의 송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 또는 참가인 등에게 우편에 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우편송달 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박종우 ☎ 043-220-4752)

제6절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사건 현황

1. 분쟁조정 사건 개요 및 처리현황

1991년 이후 2008.12.31 현재 총 42건을 접수하여 자진철회 및 처리중 사건을 제외한 3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2003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분쟁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접 수 현 황			처 리 현 황					자진철회 등	처리중 (이 월)
	계	접 수	전년이월	계	재 정	조 정	알선	합의		
합 계	61	42	19	32	8	12	1	11	8	-
'98이전	5	5		5		5				
1999	2	2		1				1		(1)
2000	2	1	1	1				1		(1)
2001	2	1	1	2		2				
2002										
2003	5	5		2			1	1		(3)
2004	7	4	3	1				1	1	(5)
2005	17	12	5	7	2	1		4	2	(8)
2006	12	4	8	9	3	4		2	3	
2007	4	4		2	2				1	(1)
2008	5	4	1	2	1			1	1	(2)

2. 분야별 조정현황

가. 피해 원인별

총 32건의 조정 처리사건 중 소음·진동분야 19건, 대기분야 8건 수질분야 3건, 기타 2건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나 도로건설 등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호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원인별 신청현황

(단위:건수)

구분 / 년도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합 계	32	19	8	3		2
1998이전	5	2	3			
1999	1		1			
2000	1		1			
2001	2	2				
2002						
2003	2	1	1			
2004	1	1				
2005	7	3	1	1		2
2006	9	7	1	1		
2007	2	2				
2008	2	1		1		

나. 피해내용별

조정신청기능의 피해내용별 추이분석결과 총 32건중 축산물피해가 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작물피해 8건, 건축물피해 6건, 건축물·정신적피해 4건, 정신적피해 3건, 내륙수산물피해 및 기타피해가 각각 1건씩 있다.

피해내용별 현황

(단위:건수)

구분 / 년도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정신적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수산물 피해	해양수산물 피해	기타 피해
계	32	3	4	9	8	6	1		1
1998이전	5	2	1			1			1
1999	1					1			
2000	1					1			
2001	2		1			1			
2002									
2003	2				1	1			
2004	1		1						
2005	7		1	2	4				
2006	9	1		5	1	1	1		
2007	2			1	1				
2008	2			1	1				

3. 향후 발전방향

환경피해의 복잡·다양화로 환경분쟁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국민들의 질 높은 환경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조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에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법원에서도 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하여 유사한 판결을 하는 추세이다.

현재 관련 사건을 통하여 인과관계의 입증 등에 대한 많은 전문기법이 개발되고 있는바, 앞으로 이러한 전문성이 더욱 보강되고, 조사의 신속성(효율성) 및 투명성 등을 보완한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환경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대체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분쟁해결제도로써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담당자 :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 박종우 ☎ 043-220-4752)

제 3 장

각종 조례 및 운영규정

제1절 충청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절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제3절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4절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제5절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6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절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제8절 『청풍명월21』 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9절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절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절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12절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절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14절 충청북도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운영규정

제15절 충청북도 자연보호선 관리운영규정

제16절 충청북도 자연 및 생활환경 청결유지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절 충청북도 대청댐주변지역협의회 설치운영규정

제1절 충청북도 환경기본 조례

(1998. 5. 22. 조례 제239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도, 시, 군,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도의 환경보전은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도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도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도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의 순화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도 및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속하여야 한다.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등 시민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

제11조(환경보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취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도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과 시장·군수 및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는 지역개발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종합계획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환경기준의 설정) ①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역배출허용기준의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환경관련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① 도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할 수 있다.

②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규제조치) 도는 환경오염의 원인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도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 수질,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연환경의 보전) ①도와 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도는 공원·녹지의 설치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정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이용등의 추진)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도민 참여 및 홍보등

제19조(도민참여) ①도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평가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는 민간인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0조(정보의 공개) 도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 및 홍보) 도는 시·군과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도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도민, 단체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도는 환경보전정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지역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 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도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EH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도는 도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도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이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환경백서) ①도는 환경 현황 및 환경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도는 제1항의 환경백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기관 및 시·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도는 환경보존을 의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국제협력강화) 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 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에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절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1989.11.10 조례 제1752호
개정 1996. 8.16 조례 제2282호
개정 2000. 3.13 조례 제2570호

제1조(목적) 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 8. 16)

③위원은 다음 각 호로 하고 도지사가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0. 3. 13)

1. 당연직위원 : 복지환경국장,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2. 위촉위원 ;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삭제 2000. 3. 13)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사업장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6조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①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00. 3. 13.)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8. 16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